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(김혜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485

발 의 년 월 일 : 2023년 02월 06일
발 의 자 : 김혜영 의원(1명)
찬 성 자 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형재, 김혜지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강산, 박ㆍ석, 박영한, 박춘선, 박칠성, 박환희, 서상열, 서호연, 소영철, 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 아이수루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 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 이새날, 이숙자, 이영실, 이은림, 이종배, 이종태, 이효원, 이희원, 임만균, 장태용, 정준호, 정지웅, 채수지, 최민규, 최유희, 허ㆍ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60명)

1. 제안이유

○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중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피해학생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수반하는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 및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사이버 폭력 및 가해학생, 피해학생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~제2조).

나.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
다.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
라.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
마. 사이버 폭력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,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폭력 중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.
2. “사이버 폭력”이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.
3. “정보통신망”이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.
4. “가해학생”이란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.
5. “피해학생”이란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계획 및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이버 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③ 학교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및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

생 선도 ·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· 시행)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 · 시행해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· 홍보
2.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· 지원
3.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· 교육
4.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
5. 사이버 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 · 지원
6.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 및 지원)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·홍보

2. 사이버 폭력 가해·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
3. 그 밖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사업
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서울특별시,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신고체계)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.

제9조(비밀 준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